

1. 개정이유

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출입국관리법」(법률 제19435호, 2023. 6. 13. 공포, 2023. 12. 14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,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신청 절차,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·재발급 신청 절차,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47조의2)
- 나.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·재발급 신청서 서식 신설(안 별지 제34호의 9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2(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)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(모바일영주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체류지 관할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집적회로(IC, Integrated Circuit)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(영주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실물 영주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

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며,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.

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

있다.

1.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
2.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
3. 분실,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
4.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사용이 불가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·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거나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
2.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
3.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하는 경우
4.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된 경우
5.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
6.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

⑥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포함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·관리 및 진위 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며, 「전자정부

법」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.

별지 제34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9서식]

모바일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
Application for New/Reissue of Mobile Residence Card

접수번호 (Receipt No.)	접수일자 (Date of Receipt)	처리기간 (Processing Period)	즉시 (Immediately)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아래 [] 항목에 √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(Please put a √ in the applicable [] below.)

신청 내용 (Type)	• 신규 발급(New) []	• 재발급(Reissue) []
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 (Applicant)	• 성명(Full Name)
	• 외국인등록번호(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.) -
	• 연락처(Phone No.) - -

아래 [] 항목에 √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(Please put a √ in the applicable [] below.)

재발급 사유 (Reasons for reissue)	• 영주증 유효기간 경과(Expiration of Permanent Resident Card) [] • 외국인등록증 재발급(Reissuance of Residence Card) [] • 이동통신단말장치 변경(Change of mobile device) [] • 기타(Other) []
	• 분실일자(Date of Loss of mobile device)

「출입국관리법」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I hereby apply as abo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Paragraph 6 of the Immigration Act and Article 47-2 Paragraph 1 or 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same Act.

년(Year) 월(Month) 일(Day)

신청인(Name of Applicant) (서명 또는 인)
(Signature or Seal)

○○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·출장소)장

To the Chief of ○○ Immigration Office(Branch Office)

제출 서류 (Documents to be submitted)	유효한 여권(Valid Passport), 외국인등록증(Residence Card) (영주증(Permanent Resident Card)포함)	수수료 없음 (No Fee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47조의2(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)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(모바일영주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체류지 관할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집적회로(IC, Integrated Circuit)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(영주증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		
		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실물 영주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.		

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며,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.

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.

1.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
2.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은 경우
3. 분실,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
4.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 사용이 불가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
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·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된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3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거나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

라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
는 경우

2.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외국
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

3.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
영주증을 재발급하는 경우

4.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이 설치
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
된 경우

5.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부정
하게 발급받은 경우

6. 그 밖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
의 효력을 말소할 필요가 있
는 경우

⑥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
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
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
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
포함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
수 있다.

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
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·관리
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
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으
며, 「전자정부법」 시행령 제12
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

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
이용할 수 있다.